

서울시가
문습니다

따릉이에도

공공자전거

의무적으로 안전모를

헬멧

착용 해야 할까요?



기간

2018.09.04

~ 2018.10.03

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

9월 28일부터

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이
시작됩니다



그렇게 되면

**앞으로 따릉이를 이용하는
정기회원뿐만 아니라**

**짧게 이용하는 시민들도
안전모를 써야 합니다**



그렇다면

따릉이(공공자전거)에도

의무적으로 안전모(헬멧)를

착용 해야 할까요?

진행

주장과 근거

- 1 사고 발생시, 머리나 안면에
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안전모
착용과 같은 사전 방지책이 필요
- 2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호주의 경우
멜버른은 편의점, 자판기 등에서 안전모를 판매하고,
브리즈번은 안전모를 무료로 제공함

반대

주장과 근거

- 1 따릉이는 짧게 이용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이며,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안전모 불필요
- 2 안전모 공용사용은 땀, 화장품 등 위생 문제가 있을 수 있고, 개인 취향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
- 3 구매. 운영 등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분실 우려도 있어 세금 등 재정 부담 작용
- 4 유럽의 자전거 선진국 대부분은 안전모 의무 착용이 없고, 의무 착용규정 있는 호주의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감소

**시민 여러분은 어떻게
생각하십니까?**

**찬성 반대와
의견을
남겨주세요.**